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원조직법」(법률 제14104호, 2016. 3. 29. 공포, 2016.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의2호 신설)
- 「민사집행법」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8호)
-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0의2호 신설)

- 채무자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업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집행촉탁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다목, 라목 신설)
-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1의2호 신설)

4.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제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민사집행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제2조제1항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제2조제1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호”를 “제10의2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민사집행법」 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입

라. 「민사집행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제3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중간 생략> 8. 「민사집행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및 동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중간 생략>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신설>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간 생략> 8.-----,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중간 생략>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

<중간 생략> 14. 제7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 나.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다. (생략) 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간 생략> 14.-----제10의2호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민사집행법」 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입 라. 「민사집행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현행 다목과 같음) 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소
--	---

2. ~ 3. (생략)	<u>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u> 2. ~ 3.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417